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제조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송용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천연가스를 1MPa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가) 항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MPa 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가목2)가)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가)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②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별표 6 제3호가목2)가) ① 및 ②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가)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②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2.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수소제조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송용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천연가스를 1MPa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
2) 배관설비기준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또는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MPa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② 별표 5 제3호에 따라 설치 할 것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 MPa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②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	---